

신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 61 조 (학칙의 신설 및 개정) 총장은 학칙의 신설 및 개정안을 작성하며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·시행한 후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</p> | <p>제 61 조 (학칙의 제정 및 개정) 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공고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련 법령, 정관 등 상위 규범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개정 2.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 개정 3. 단순한 자구 수정,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<p>부칙 ①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p> |